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장사시설이 2016년 9월 정식 운영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변경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사시설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10조, 별표 1 ~ 별표 3)
당초 : 구미추모공원 → 변경 : 구미시추모공원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'구미추모공원'을 '구미시추모공원'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,
- 묘지·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,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